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60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김태선·김주영·박 정

허 영 • 윤종군 • 윤준병

정준호 · 장철민 · 한민수

김남근 • 위성락 • 이용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원인조사와 예방대책 마 런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 인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 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해 원인을 분석한 재해조사의견서의 작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재해 개요, 원인 분석, 조사 주체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안전청(HSE) 역시 사고 경위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관과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 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역할과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개요,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재해 조사의견서의 작성 및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공개 범위와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을 원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2(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의 개요,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중대재해의 개요, 발생 원인과 재 발방지 대책, 공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을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를" 로 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자제170조제2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종전에 작성한 재해
조사의견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			
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			
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고용노</u>		
	동부장관은 공단을 원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		
	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	③		
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u>고용노동부장관의</u> 원인조사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관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		
	<u>다)의</u>		
	<u>.</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6조의2(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u>		
	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		
	한 중대재해의 개요. 발생 원인		

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해 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하여 야 한다.
-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 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하는 중대재해의 개요,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공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 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 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 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 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 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신 설>

4. ~ 13. (생 략)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및 지도 등) ①
<u>및 역학조사를</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밀 유지)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u>
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자
4. ~ 13. (현행과 같음) 제170조(벌칙)
에11U年(宣領)

하나에	해딩	강하는	자는	1년	0]
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	기하
의 벌금	에	처하다			

- 1. (생략)
-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 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 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sim	8	(생	략)
U.		Ο.	\ O	$ ^{\prime}$

<u>.</u>
1. (현행과 같음)
2
<u>고용노동부</u>
<u> 장관 및 공단등의</u>
3. ~ 8. (현행과 같음)